



Search



판례판결정보

- ▶ 통합검색
- ▶ 공보
- ▶ 대법원주요판결
- ▶ 전국법원주요판결
- ▶ 영문판례
- ▶ 중문판례
- ▶ 화제의 판결

■ 전국법원주요판결

Home > 판례판결정보 > 전국법원주요판결 > 상세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13구합29605.pdf

등록일: 2015.04.06 조회: 174

제목: 교육부의 검정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하여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3구합29605 판결

[판결 요지]

1.보통교육 시행의 목적 및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검정신청한 도서가 교육상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 학생 수준에 적절한지, 편향적인 이론·시각·표현을 담고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 내지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 그 심사사항이 원칙적으로 오기·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과서에 관련된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의 법적성질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해제인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다는 어떠한 책자에 대하여 교과서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치창설적인 형성적 행위로서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국가가 그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하여 추후에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이 집필한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피고의 수정명령은 그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검정권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글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나19835 결혼중개료등 판결

목록보기

107 손말이음센터

연중무휴 국번없이 107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COPYRIGHT(C) 2012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ALL RIGHT RESERVED.

관련사이트

